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6. 23 선고 2021가합50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최진욱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준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2,128,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2022. 6. 2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107,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 1) D는 E와 사이에 피고 B, F, 원고, G를 자녀로 두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 2) D는 2013. 4. 23., E는 2020. 1. 3., 각 사망하였고, F은 2020. 10. 25.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현황

- 1)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토지가 있었다.
- 2) F은 별지 목록 순번 1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순번 4 건물을 건축하여 2003. 2. 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으로 지칭한다).
- 3)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4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위 음식점의 부속 주차장으로 이용해왔다.

다. 원고의 기간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율

- 1) 망인이 2013. 4. 23.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의 배우자 E가 3/11, 자녀인 피고 B, F, 원고, G이 각 2/11씩 상속하였다.

2) 위 상속인 중 E가 2020. 1. 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지분 3/11은 그 자녀들인 피고 B, F, 원고, G에게 각 3/44씩 상속되었다.

3) 위 상속인 중 F이 2020. 10. 25.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지분 $1/4 (= 2/11 + 3/44)$ 은 그 형제자매인 피고 B, 원고, G에게 각 1/12씩 상속되었다.

4)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간별 지분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시기	종기	원고의 지분
2013. 4. 23.	2020. 1. 2.	2/11
2020. 1. 3.	2020. 10. 24	$1/4(2/11 + 3/11 \times 1/4)$
2020. 10. 25.		$1/3(1/4 + 1/4 \times 1/3)$

라. 상속재산의 기간별 차임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의 기간별 차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제2 부동산	이 사건 제3 부동산
2013. 4. 23. ~ 2020. 1. 2.	173,021,000	40,169,000	13,555,000
2020. 1. 3. ~ 2020. 10. 24.	23,077,000	5,607,000	1,858,000
2020. 10. 25. ~ 2022. 2. 17.	39,046,000	9,541,000	3,149,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차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건물인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짓고, 위

건물에서 공동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위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의 차임 상당 금원 중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락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토지에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짓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와 같은 위 토지의 사용 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제한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사용대차 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 전원이 피고 C에게 위 약정에 대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망인의 상속인들 전원이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C이 위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각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B

건물의 소유자가 위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C이 건물인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각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건물인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짓고, 위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위 음식점 영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감정인 H의 차임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부동산은 북측 하단부가 일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남측 대부분은 밭 또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이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이 피고 C과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B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C의 사용대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광명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인이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 F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건축물을 짓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토지사용승낙서의 기재에 의하면, 토지사용자가 F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는 망인이 F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의사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토지사용승낙서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인이 그 토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일 뿐, 더 나아가 위 토지에 대한 건축물신축 이후의 무상사용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실조회 결과를 비롯하여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살피건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율이 2013. 4. 23.부터 2020. 1. 2.까지는 2/11, 2020. 1. 3.부터 2020. 10. 24.까지는 1/4, 2020. 10. 25.부터 2022. 2. 17.까지는 1/3인 사실,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기간별 차임이 2013. 4. 23.부터 2020. 1. 2.까지는 173,021,000원, 2020. 1. 3.부터 2020. 10. 24.까지는 23,077,000원, 2020. 10. 25.부터 2022. 2. 17.까지는 39,046,000원인 사실,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기간별 차임이 2013. 4. 23.부터 2020. 1. 2.까지는 40,169,000원, 2020. 1. 3.부터 2020. 10. 24.까지는 5,607,000원, 2020. 10. 25.부터 2022. 2. 17.까지는 9,541,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2013. 4. 23.부터 2022. 2. 17.까지 기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사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62,128,484원(= 38,761,818원1) + 7,171,000원2) + 16,195,666원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62,128,48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언, 판사 남승정, 판사 김가영

별지

1) 2013. 4. 23. ~ 2020. 1. 2. 부당이득 213,190,000원(173,021,000원 + 40,169,000원) × 2/11 = 38,761,818원(원 미만 버림)

2) 2020. 1. 3. ~ 2020. 10. 24. 부당이득 28,684,000원(23,077,000원 + 5,607,000원) × 1/4 = 7,171,000원

3) 2020. 10. 25. ~ 2022. 2. 17. 부당이득 48,587,000원(39,046,000원 + 9,541,000원) × 1/3

= 16,195,666원(원 미만 버림)